

의안 번호	2325	[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8. 22.(목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8. 22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9. 5.(목)

2. 제안이유

-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정지출의 통합적 운용을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회계관직공무원 관직 지정(안 제5조)
 -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삭제
- 준용 규정 신설(제6조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회계법」 제45조, 제46조
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- 「지방회계법」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

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-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지출과 자금관리 업무를 회계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과 자금관리를 일원화하고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「지방회계법」

제45조(재정의 통합지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.

제4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,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,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, 의회사무기구,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.

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·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. 다만,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, 법 제36조의 재무관·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. 다만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